

# 도마 포레나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문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마 포레나해모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견본주택 방문안내

- 신종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견본주택 인원제한이 해제되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수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doma>)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청약 및 사전검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도마 포레나해모로’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dom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제출 일정,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도마 포레나해모로’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doma>)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상담 전화(☎ 1600-2606),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선 상담시, 신청자가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17.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2.11.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이거나 만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 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  |
|---------------|--|
| ‘분양권 등’신규 계약자 |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br>※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  | 적용   | 적용  | -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X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월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은 본 주택 해당순위(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체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형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형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doma/)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        | 6개월                            |  | 6개월  |
| 전매제한기간 |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분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 1순위   | 2순위            |  |                                 |                                 |
| 일정 | 2023.11.27.(월)   |  | 2023.11.28.(화)  | 2023.11.29.(수) | 2023.12.06.(수)   | 2023.12.08.(금) ~ 2023.12.14.(목) | 2023.12.18.(월) ~ 2023.12.20.(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6:30)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6:30)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주소</li> <li>- 주소 : 서구 계백로 1193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li> <li>- 문의 : ☎ 1600-2606</li> </ul>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 8194호(2023.11.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7개동 총 818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5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 192세대, 임대 52세대, 보류지 6세대]
  - [특별공급 29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8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 ▣ 입주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민영주택) (단위 : ㎡,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계   |          |               |
| 민영 주택 | 2023000601 | 01 | 059.9400A  | 59A   | 59.9400   | 24.0635 | 84.0035  | 56.1296          | 140.1331 | 30.8834  | 209     | 31       | 20     | 37    | 18    | 6      | 112 | 97       | 8             |
|       |            | 02 | 059.9300B  | 59B   | 59.9300   | 25.6535 | 85.5835  | 56.1202          | 141.7037 | 31.4643  | 111     | 16       | 11     | 19    | 9     | 3      | 58  | 53       | 4             |
|       |            | 03 | 074.6400A  | 74A   | 74.6400   | 27.8953 | 102.5353 | 69.8950          | 172.4303 | 37.6965  | 65      | 9        | 6      | 11    | 5     | 1      | 32  | 33       | 3             |
|       |            | 04 | 074.5000B  | 74B   | 74.5000   | 28.2053 | 102.7053 | 69.7639          | 172.4692 | 37.7590  | 92      | 13       | 9      | 16    | 8     | 2      | 48  | 44       | 4             |
|       |            | 05 | 084.9300   | 84    | 84.9300   | 25.6643 | 110.5943 | 79.5308          | 190.1251 | 40.6594  | 86      | 12       | 8      | 15    | 7     | 2      | 44  | 42       | 8             |
|       |            | 06 | 101.7400   | 101   | 101.7400  | 31.7705 | 133.5105 | 95.2723          | 228.7828 | 49.0844  | 5       | -        | -      | -     | -     | -      | -   | 5        | 2             |
| 합계    |            |    |            |       |           |         |          |                  |          |          | 568     | 81       | 54     | 98    | 47    | 14     | 294 | 274      | 29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 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비분은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 수 | 동·호   | 총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시        |             |
|       |         |   |         |        |             |             |            |             | 계약 시       | 2023.12.28 | 2024.05.10. | 2024.10.10. | 2025.03.10. | 2025.08.10. | 2026.01.10. | 2026.07.10. |             |             |
| 59A   | 209     | 101동 3,4호<br>104동 1,2,6호<br>105동 1,2호<br>106동 2호<br>107동 1,2호 | 2층      | 8      | 133,162,500 | 264,337,500 | -          | 397,500,000 | 10,000,000 | 29,750,000 | 39,750,000  | 39,750,000  | 39,750,000  | 39,750,000  | 39,750,000  | 39,750,000  | 39,750,000  | 119,250,000 |
|       |         |   | 3층~4층   | 18     | 140,030,000 | 277,970,000 | -          | 418,000,000 | 10,000,000 | 3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125,400,000 |
|       |         |   | 5층~9층   | 50     | 142,710,000 | 283,290,000 | -          | 426,000,000 | 10,000,000 | 3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127,800,000 |
|       |         |   | 10층~15층 | 55     | 145,725,000 | 289,275,000 | -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         |   | 16층~20층 | 42     | 149,410,000 | 296,590,000 | -          | 446,000,000 | 10,000,000 | 3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133,800,000 |
|       |         |   | 21층~25층 | 25     | 151,420,000 | 300,580,000 | -          | 452,000,000 | 10,000,000 | 3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45,200,000  | 135,600,000 |
|       |         |   | 26층이상   | 11     | 154,435,000 | 306,565,000 | -          | 461,000,000 | 10,000,000 | 3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46,100,000  | 138,300,000 |
| 59B   | 111     | 101동 2호<br>104동 3호<br>105동 3호<br>106동 3호<br>107동 3호           | 2층      | 4      | 133,330,000 | 264,670,000 | -          | 398,000,000 | 10,000,000 | 2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119,400,000 |
|       |         |   | 3층~4층   | 8      | 140,365,000 | 278,635,000 | -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         |   | 5층~9층   | 25     | 143,380,000 | 284,620,000 | -          | 428,000,000 | 10,000,000 | 32,800,000 | 42,800,000  | 42,800,000  | 42,800,000  | 42,800,000  | 42,800,000  | 42,800,000  | 42,800,000  | 128,400,000 |
|       |         |   | 10층~15층 | 29     | 146,395,000 | 290,605,000 | -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         |   | 16층~20층 | 20     | 149,745,000 | 297,255,000 | -          | 447,000,000 | 10,000,000 | 3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134,100,000 |
|       |         |   | 21층~25층 | 18     | 152,090,000 | 301,910,000 | -          | 454,000,000 | 10,000,000 | 3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136,200,000 |
|       |         |   | 26층이상   | 7      | 155,105,000 | 307,895,000 | -          | 463,000,000 | 10,000,000 | 3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138,900,000 |
| 74A   | 65      | 101동 1호<br>104동 5호<br>106동 1호                                 | 2층      | 3      | 166,830,000 | 331,170,000 | -          | 498,000,000 | 10,000,000 | 3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149,400,000 |
|       |         |   | 3층~4층   | 6      | 174,200,000 | 345,800,000 | -          | 520,000,000 | 10,000,000 | 4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156,000,000 |
|       |         |   | 5층~9층   | 15     | 177,885,000 | 353,115,000 | -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 10층~15층 | 18     | 181,570,000 | 360,430,000 | -          | 542,000,000 | 10,000,000 | 4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62,600,000 |
|       |         |   | 16층~20층 | 15     | 185,925,000 | 369,075,000 | -          | 555,000,000 | 10,000,000 | 4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66,500,000 |
|       |         |   | 21층~25층 | 7      | 188,940,000 | 375,060,000 | -          | 564,000,000 | 10,000,000 | 4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69,200,000 |
|       |         |   | 26층이상   | 1      | 192,290,000 | 381,710,000 | -          | 574,000,000 | 10,000,000 | 4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172,200,000 |
| 74B   | 92      | 104동 4호<br>105동 4호<br>106동 4호<br>107동 4호                      | 2층      | 4      | 164,150,000 | 325,850,000 | -          | 490,000,000 | 10,000,000 | 3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         |   | 3층~4층   | 8      | 171,855,000 | 341,145,000 | -          | 513,000,000 | 10,000,000 | 4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53,900,000 |
|       |         |   | 5층~9층   | 20     | 175,540,000 | 348,460,000 | -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         |   | 10층~15층 | 24     | 179,225,000 | 355,775,000 | -          | 535,000,000 | 10,000,000 | 4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160,500,000 |
|       |         |   | 16층~20층 | 18     | 183,580,000 | 364,420,000 | -          | 548,000,000 | 10,000,000 | 4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164,400,000 |
|       |         |   | 21층~25층 | 12     | 186,260,000 | 369,740,000 | -          | 556,000,000 | 10,000,000 | 4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66,800,000 |
|       |         |   | 26층이상   | 6      | 189,945,000 | 377,055,000 | -          | 567,000,000 | 10,000,000 | 4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84    | 86      | 103동 1,2호<br>105동 5,6호<br>106동 5,6호<br>107동 5,6호              | 2층      | 8      | 187,600,000 | 372,400,000 | -          | 560,000,000 | 10,000,000 | 4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56,000,000  | 168,000,000 |
|       |         |   | 3층~4층   | 16     | 195,640,000 | 388,360,000 | -          | 584,000,000 | 10,000,000 | 4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         |   | 5층~9층   | 40     | 199,660,000 | 396,340,000 | -          | 596,000,000 | 10,000,000 | 4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59,600,000  | 178,800,000 |
|       |         |   | 10층~15층 | 12     | 203,680,000 | 404,320,000 | -          | 608,000,000 | 10,000,000 | 5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60,800,000  | 182,400,000 |
|       |         |   | 16층~20층 | 2      | 209,040,000 | 414,960,000 | -          | 624,000,000 | 10,000,000 | 5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62,400,000  | 187,200,000 |
|       |         |   | 21층~25층 | 2      | 212,055,000 | 420,945,000 | -          | 633,000,000 | 10,000,000 | 5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189,900,000 |
|       |         |   | 26층이상   | 6      | 216,075,000 | 428,925,000 | -          | 645,000,000 | 10,000,000 | 5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193,500,000 |
| 101   | 5       | 102동 1,2호   | 2층      | 2      | 237,515,000 | 428,622,727 | 42,862,273 | 709,000,000 | 10,000,000 | 60,900,000 | 70,900,000  | 70,900,000  | 70,900,000  | 70,900,000  | 70,900,000  | 70,900,000  | 212,700,000 |             |
|       |         |   | 3층~4층   | 3      | 247,900,000 | 447,363,636 | 44,736,364 | 740,000,000 | 10,000,000 | 6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222,000,000 |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기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 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해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급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                | 59A     | 59B | 74A | 74B | 84 | 101 | 합계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대전광역시   | 3   | 1   | 1   | 1  | 1   | -   | 7  |
|             |                | 충청남도    | 1   | 1   | 1   | 1  | 1   | -   | 5  |
|             |                | 세종특별자치시 | 1   | 1   | 1   | 1  | 1   | -   | 5  |
|             | 국가유공자          |         | 5   | 3   | 1   | 2  | 2   | -   | 13 |
|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         | 5   | 2   | 1   | 2  | 2   | -   | 12 |
|             | 중소기업 근로자       |         | 5   | 2   | 1   | 2  | 2   | -   | 12 |
|             | 시책추진           |         | 11  | 6   | 3   | 4  | 3   | -   | 2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37      | 19  | 11  | 16  | 15 | -   | 98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20      | 11  | 6   | 9   | 8  | -   | 54  |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6       | 3   | 1   | 2   | 2  | -   | 14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8      | 9   | 5   | 8   | 7  | -   | 47  |    |
| 합계          |                | 112     | 58  | 32  | 48  | 44 | 0   | 294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b>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b>특별공급 횟수 제한</b>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              |          |          |          |              |          |          |            |       |            |          |            |
| <b>무주택 요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b>청약자격 요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o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입주자저축 예치금액]</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br/>(대전광역시 거주자)</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 이상</td> <td>20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d>6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 이상</td> <td>4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000만원 이상</td> <td>500만원 이상</td> <td>1,5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그 밖의 광역시<br>(대전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모든 면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그 밖의 광역시<br>(대전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li> </ul>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무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li> <li>•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시책추진 포함 81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해당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시책추진           |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br>2023.11.17.(금)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자산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우선공급 [ 세대수의 5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일반공급 [ 세대수의 2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③ 추첨제 [ 남은 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와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3년 적용

| 공급유형  |                     |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br>기준<br>구분  | 우선공급<br>(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                            | 7,622,057원~  | 8,040,493원~  | 8,701,640원~  | 9,362,787원~  | 10,023,934원~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                            | 7,622,057원~  | 8,040,493원~  | 8,701,640원~  | 9,362,787원~  | 10,023,934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                            | 9,146,468원~  | 9,648,591원~  | 10,441,968원~ | 11,235,344원~ | 12,028,721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br>(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br>-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br>-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을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br>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5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포함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한 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li>•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li> <li>※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li> </ul> </li> <li>(2)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li> </ul> </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4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br>2023.11.17.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기준 기본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br>10,415,123원       | 9,908,674원~<br>12,195,290원       | 10,452,641원~<br>12,864,787원      | 11,312,132원~<br>13,922,622원      | 12,171,623원~<br>14,980,458원      | 13,031,114원~<br>16,038,293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1인 가구             | 160%이하<br><br>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3원<br><br>10,415,124원~ | ~12,195,290원<br><br>12,195,291원~ | ~12,864,787원<br><br>12,864,788원~ | ~13,922,622원<br><br>13,922,623원~ | ~14,980,458원<br><br>14,980,459원~ | ~16,038,293원<br><br>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1인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 1인 가구(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  |
|-------------------------------|--|
| 가구원수 적용기준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br>※ 청약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b>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합니다. |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br>(연간소득÷근무월수) |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년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br>(단,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                           | 연간소득<br>근무월수<br>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기준<br>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
| 사업자                           | 사업자<br>근무월수<br>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기준<br>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 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br>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기준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단,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Ⅲ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2.11.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신청합니다.</li> <li>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주택형별로 총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ul> <p><b>※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②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④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ol>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 구분           | 그 밖의 광역시<br>(대전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br>(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상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 모든 면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6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 전용 60㎡초과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 전용 85㎡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일반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li> <li>※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li> </ul> </li> <li>(2)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li> </ul> </li> </ul> </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 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 자격 변경 요건**
  -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가)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나) 청약부금은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2)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연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나)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청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 구분      | 공급세대 | 접수      | 정당당첨자<br>계약 ② | 잔여세대   |        | 잔여세대<br>추가계약 ① | 청약시 주택 소유 판단여부              |
|---------|------|---------|---------------|--------|--------|----------------|-----------------------------|
|         |      |         |               | 미분양(가) | 미계약(나) |                |                             |
| A유형(타입) | 100  | 200(경쟁) | 100           | X      | X      | -              | ② 주택 소유                     |
| B유형(타입) | 100  | 200(경쟁) | 80            | X      | 20     | 20             | ② 주택 소유 / (나) 주택 소유         |
| C유형(타입) | 100  | 50(미달)  | 30            | 50     | 20     | 70 *           | ② 주택 소유 / (가), (나) 주택 소유 아님 |
| D유형(타입) | 100  | 50(미달)  | 50            | 50     | X      | 50 *           | ② 주택 소유 / (가) 주택 소유 아님      |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 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 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IV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일시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 2023.11.27.(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br>※ 견본주택 방문 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만 가능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사업주체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계백로 1193)</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3.11.28.(화) 09:00~17:30   |                        |   |
|      | 2순위                             | 2023.11.29.(수) 09: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 KB국민인증서 또는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시 아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를 확인 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구비사항   |   |         |           |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ul>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는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는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는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li> </ul> |

|                            |   |
|----------------------------|---|
|                            | <p>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전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3.12.06.(수)</li> <li>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쏘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3.12.06.(수) ~ 2023.12.15.(금)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li> </ul>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제공일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br>2023.12.0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 홈 > 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유의사항

| 구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
|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 2023.12.08.(금) ~ 2023.12.14.(목) (10:00~16:30) |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br>(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93번지)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영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간주)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자격확인서류(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17.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대상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서약서<br>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내 비치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br>"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br>"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br>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br>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br>"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br>"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자녀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br>·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b>“상세”로 발급</b>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b>“상세”로 발급</b>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b>대법원인터넷기소(www.iros.go.kr)&gt;등기열람/발급&gt;부동산&gt;부동산소유현황</b>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b>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               |              |                          |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br>-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 건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
|               |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b>“상세”로 발급</b>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br>*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b>“전체 포함”으로 발급</b> |
|               |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br>·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b>“상세”로 발급</b>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비속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생애최초          | ○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
|------------------------------|--------------|--|--|--|
| 특별공급                         |              |  |  |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b>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b> >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b>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 일반공급 (가점제)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자  | · 건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br>·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해외 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한명이라도 청약신청자와 동일국가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br>· 기타 우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우호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br>*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내 비치)  |
|                              | ○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br>※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 근로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③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원)충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충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br>※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br>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근로 소득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 해당직장/세무서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 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br>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① 접수장소<br>② 세무서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홍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서류구분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br>기본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br>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br>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br>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br>※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br>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청징수영수증<br>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br>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자 : 갑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br>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br>※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br>※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br>-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br>-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br>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br>(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br>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3, 2015, 2017, 2019, 2022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 서류구분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산기준<br>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br>(www.iros.go.kr)         |
|              | 부동산 소유자  |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재산세 납부내역<br>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br>※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흥택스 / 시가표준액 : 위텍스                                     |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br>② 위텍스<br>③ 해당 사이트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신청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VII

당첨자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문의 전화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3.12.18.(월) ~ 2023.12.20.(수) (10:00~16:30) |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 [서구 계백로 1193(도안동)] | ☎ 1600-2606 |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722101-01-610327 | (주)한화(외2인)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사용</li> <li>•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li> <l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불가</li> <li>•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li> <li>•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li> <li>•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li> </ul>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    |          | 인감도장               |      |  |
|         | ○    |          | 신분증                |      |  |
|         | ○    |          | 정부수입인지             |      |  |

|          |   |                        |     |   |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                        | 청약자 | • 홈페이지 서식 참조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 대리인 계약 시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이 있는 주택형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또는 현장 접수 등)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그 외 주택형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정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 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실제 키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중 선도래하는 날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납부 및 관리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는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봉.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최초 공급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 인지세 납부 안내

|            |  |
|------------|--|
|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
| 납부기한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 납부 및 구입 방법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br>-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분양가, 발코니확장금액, 유상옵션금액의 총합계약이 1억원 이상~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시 : 35만원)을 납입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9항 일부개정예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VIII

## 입주 관련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완납, 입주, 소유권 이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비 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실제 키 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중 선도래하는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자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납부 및 관리 등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관리 책임 등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중 발급 전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상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한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실, 샤워실&락커룸,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 지하주차장 높이 : B1F - 4,050mm / B2F - 3,150mm / B3F - 3,300mm / 유효높이 : B1F - 2,700mm / B2F - 2,300mm / B3F - 2,300mm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 됨.

◆ 철도 인접지역으로 별도의 방음벽공사가 있으나, 열차 운행시간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10%)  |  | 잔금(90%)    |  |
|-----|------------|-----------|--|------------|--|
|     |            | 계약 시      |  | 입주지정일      |  |
| 59A | 17,100,000 | 1,710,000 |  | 15,390,000 |  |
| 59B | 17,100,000 | 1,710,000 |  | 15,390,000 |  |
| 74A | 18,900,000 | 1,890,000 |  | 17,010,000 |  |
| 74B | 18,900,000 | 1,890,000 |  | 17,010,000 |  |
| 84  | 22,300,000 | 2,230,000 |  | 20,070,000 |  |
| 101 | 26,700,000 | 2,670,000 |  | 24,030,000 |  |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 국민은행 | 722101-01-610356 | (주)한화(외1인)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자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고 확장형 대비 실내공간의 크기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벽 창호 미설치 및 철재난간 설치되며, 발코니 안쪽 벽체에 창호가 설치됩니다(창호의 개수 및 형태는 확장형과 상이할 수 있음).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에게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행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따른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품목                           | 적용타입            | 구성                                | 적용                 | 제조사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시스템에어컨<br>59A / 59B /<br>74B | 59A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안방              | LG 전자      | 4,200,000 | 420,000   | 3,780,000 |
|                              | 59B             |                                   |                    |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74B             |                                   |                    |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59A / 59B / 74B | 공기청정 KIT 추가 (2개소)                 |                    |            | 600,000   | 60,000    | 540,000   |
|                              | 59A             | 침실1,2 냉매배관 추가 (2개소)               |                    |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59B             |                                   |                    |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74B             |                                   |                    |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59A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안방+침실1,2        |            | 7,000,000 | 700,000   | 6,300,000 |
|                              | 59B             |                                   |                    |            | 7,300,000 | 730,000   | 6,570,000 |
|                              | 74B             |                                   |                    |            | 7,800,000 | 780,000   | 7,020,000 |
| 59A / 59B / 74B              | 공기청정 KIT (4개소)  |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시스템에어컨<br>74A                | 74A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안방              | 4,300,000  | 430,000   | 3,870,000 |           |
|                              |                 | 공기청정 KIT 추가 (2개소)                 |                    | 600,000    | 60,000    | 540,000   |           |
|                              |                 | 침실1,2,알파룸 냉매배관 추가 (3개소)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74A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안방+침실1,2+알파룸    | 9,000,000  | 900,000   | 8,100,000 |           |
|                              |                 | 공기청정 KIT (5개소)                    |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시스템에어컨<br>84/101             | 84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주방+안방           | 5,900,000  | 590,000   | 5,310,000 |           |
|                              | 101             |                                   |                    | 6,500,000  | 650,000   | 5,850,000 |           |
|                              | 84 / 101        | 공기청정 KIT 추가 (3개소)                 |                    | 800,000    | 80,000    | 720,000   |           |
|                              | 84 / 101        | 침실1,2,알파룸 / 침실1,2,3 냉매배관 추가 (3개소) |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 84              |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거실+주방+안방+침실1,2+알파룸 | 10,800,000 | 1,080,000 | 9,720,000 |           |
|                              | 101             |                                   | 거실+주방+안방+침실1,2,3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                              | 84 / 101        | 공기청정 KIT (6개소)                    |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욕실(공용)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프리미엄 욕실(욕실1)<br>인테리어옵션<br>(59,74)      | 59A  | 1. 600*1,200 벽타일 APN SNOW + 300*300 바닥타일 SABLE LIGHT<br>2. 세면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15-0KAKA11AA  | 2,800,000 | 280,000   | 2,520,000 |
|  | 59B  | 3. 세면대: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F516<br>4. 욕조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B2753-0KAKD11BA   | 2,800,000 | 280,000   | 2,520,000 |
|  | 74A  | 5. 일자선반: 범한 N-0906/NI<br>6. 수건걸이: 범한 NU-014L-1/NI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74B  | 7. 휴지걸이: 범한 N-1208T/NI<br>8. 양변기: 도기: C366000B + 비데: C831700E   | 3,000,000 | 300,000   | 2,700,000 |
| 프리미엄 욕실(욕실2)<br>인테리어옵션<br>(59,74)      | 59A  | 1. 600*1,200 벽타일 FLOW WHITE + 300*300 바닥타일 SABLE LIGHT<br>2. 세면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15-0KAKA11AA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59B  | 3. 세면대: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F516<br>4. 샤워수전: PLAT (FC5780-6DAK221AA) M1B555 (840파이프) M1B557 (1100파이프)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74A  | 5. 일자선반: 범한 N-0906/NI<br>6. 수건걸이: 범한 NU-014L-1/NI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74B  | 7. 휴지걸이 범한 N-2208T/NI<br>8. 양변기: 도기: C366000B + 비데: C831700E<br>9. 샤워부스 프레임 컬러 변경   | 3,200,000 | 320,000   | 2,880,000 |
| 프리미엄 욕실(욕실1)<br>인테리어옵션<br>(84,101)     | 84   | 1. 600*1,200 벽타일 APN SNOW + 300*300 바닥타일 SABLE LIGHT<br>2. 세면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15-0KAKA11AA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101  | 3. 세면대: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F516<br>4. 욕조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B2753-0KAKD11BA<br>5. 일자선반: 범한 N-0906/NI<br>6. 수건걸이: 범한 NU-014L-1/NI<br>7. 휴지걸이 범한 N-1208T/NI<br>8. 양변기: 도기: C366000B + 비데: C831700E                        | 3,200,000 | 320,000   | 2,880,000 |
| 프리미엄 욕실<br>(욕실2)<br>인테리어옵션<br>(84,101) | 84   | 1. 600*1,200 벽타일 FLOW WHITE + 300*300 바닥타일 SABLE LIGHT<br>2. 세면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15-0KAKA11AA<br>3. 세면대: 위즈덤 WD-38579<br>4. 샤워수전: PLAT (FC5780-6DAK221AA) M1B555 (840파이프) M1B557 (1100파이프)                   | 4,000,000 | 400,000   | 3,600,000 |
|  | 101  | 5. 일자선반: 범한 N-0906/NI<br>6. 수건걸이: 범한 NU-014L-1/NI<br>7. 휴지걸이 범한 BP-301WP/NI<br>8. 양변기: 도기: C366000B + 비데: C831700E<br>9. 샤워부스 프레임 컬러 변경<br>10. 하부장타입 세면대 가구 업그레이드<br>11. 세면대 상판: KCC KSU-105 CONCRETE WHITE | 4,200,000 | 420,000   | 3,780,000 |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 59A  | 1. 상부플랩장<br>2. 아일랜드 후드 (하츠 ISH-46S)<br>3. 세라믹 벽체 및 상판 마감 (KCC KSU-116 트레버틴베인 화이트)<br>4. 식탁 천장 조명 업그레이드<br>5. 고급사각 싱크볼 (백조 HSQS5R9012A)<br>6. 고급 싱크수전 (아메리칸탠다드 FD1880) | 5,100,000 | 510,000   | 4,590,000 |
|                 | 59B  |   | 5,300,000 | 530,000   | 4,770,000 |
|                 | 74A  |   | 5,200,000 | 520,000   | 4,680,000 |
|                 | 74B  |   | 5,300,000 | 530,000   | 4,770,000 |
|                 | 84   |   | 5,900,000 | 590,000   | 5,310,000 |
|                 | 101  |   | 6,200,000 | 620,000   | 5,580,000 |

#### ■ 바닥타일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바닥타일 | 59A  | 거실/주방/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600*600) : LOUNGE PEARL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59B  |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74A  |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74B  |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84   |  | 2,700,000 | 270,000   | 2,430,000 |
|      | 101  |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거실, 복도 벽 시트판넬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거실, 복도 벽<br>시트판넬 | 59A  | 벽 시트판넬 | 1,700,000 | 170,000   | 1,530,000 |
|                  | 59B  |        | 3,600,000 | 360,000   | 3,240,000 |
|                  | 74A  |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74B  |        | 3,700,000 | 370,000   | 3,330,000 |
|                  | 84   |        | 2,700,000 | 270,000   | 2,430,000 |
|                  | 101  |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아트월타일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아트월타일 변경 | 59A  | 이태리산 아트월 타일<br>(상아타일: BLUESAVOY-MOON)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59B  |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74A  |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74B  |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84   |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101  |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거실, 침실조명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거실, 침실<br>조명옵션 | 59A  | 1. 거실간접등 2개소 추가<br>2. 안방, 침실 천정사각등 상향변경<br>(색온도조절, 디밍 가능 타입/ 84 알파룸, 101 침실3 포함)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59B  |  | 1,700,000 | 170,000   | 1,530,000 |
|                | 74A  |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74B  |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84   |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101  |  | 1,600,000 | 160,000   | 1,440,000 |

■ 중문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중문 | 전타입  | 세한 3연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수동문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전타입  | 세한 3연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자동문     | 2,800,000 | 280,000   | 2,520,000 |
|    | 전타입  | 현대 L&C 3연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수동문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전타입  | 현대 L&C 3연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자동문 | 4,200,000 | 420,000   | 3,780,000 |

■ 자녀방 불박이장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자녀방 불박이장 | 59A  | 침실1 슬라이딩 불박이장 1개소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59B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74A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74B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84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101  |                   | 1,900,000 | 190,000   | 1,710,000 |

■ 가전기기

| 품목 | 적용타입 | 상세 | 가격 | 계약금 (10%) | 잔금 (90%) |
|----|------|----|----|-----------|----------|
|----|------|----|----|-----------|----------|

|                  |     |   |           |         |           |
|------------------|-----|---|-----------|---------|-----------|
| 빌트인오븐            | 전타입 | LG MZ385EBT1                                | 500,000   | 50,000  | 450,000   |
| 실링첸              | 전타입 | DCF-K52070                                  | 400,000   | 40,000  | 360,000   |
| 주방액정 TV          | 전타입 | 동영앰텍 DM D5102Q                              | 300,000   | 30,000  | 270,000   |
| 식기세척기 LG         | 전타입 | LG DIB22S                                   | 1,300,000 | 130,000 | 1,170,000 |
| 식기세척기 쿠쿠         | 전타입 | 쿠쿠 CDW-C125FBW                              | 700,000   | 70,000  | 630,000   |
| 인덕션 1            | 전타입 | 3구 인덕션1 (LG BEI3GQBI)                       | 1,200,000 | 120,000 | 1,080,000 |
| 인덕션 2            | 전타입 | 3구 인덕션2 (LG BEI3WWQLBI)                     | 1,400,000 | 140,000 | 1,260,000 |
| 3구 하이브리드 쿡탑      | 전타입 | 3구 하이브리드 (LG BEY3GBI)                       | 1,000,000 | 100,000 | 900,000   |
| LG 오브제<br>빌트인냉장고 | 전타입 | 냉장: BC1L2AA / 냉동: BC1F2AA / 김치냉장고: BC1K2AAC | 5,800,000 | 580,000 | 5,220,000 |
| 전동루버장치           | 전타입 | ㈜금강시스템하우징                                   | 600,000   | 60,000  | 540,000   |
|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 전타입 | LG전자  | 2,100,000 | 210,000 | 1,890,000 |
| 복합환풍기            | 전타입 | 휴젠트   | 1,400,000 | 140,000 | 1,260,000 |

#### 추가 선택품목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 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의 해제 사유는 본 아파트 계약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국민은행 | 722101-01-610343 | (주)한화(외1인) |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X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공통 | <p><b>일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2020년 11월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신축사업으로, 일부 법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li> <li>▪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a href="https://hanwha.forena.co.kr/doma/">https://hanwha.forena.co.kr/doma/</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본 시공범위(공동주택부지) 외 기반시설(도로, 녹지, 학교, 상하수, 전기, 난방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의 지연에 따라 사용승인이 연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당 사업 외 소공원 등 공공시설물 설립 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li> <li>▪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 및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 등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및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doma/>)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탐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자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정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및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철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성)

|                  |   |
|------------------|---|
|                  | <p>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li>▪본 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형식 등은 변경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가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 유무 및 타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유리난간형 창호 적용으로 이사장 운반시 거실, 안방 발코니를 통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공용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li> <li>▪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 또는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입주예정자를 공사 현장 등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li> </ul> |
|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홍보물은 2023년 10월 13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인가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li> <li>▪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인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용 장소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임대차 관련 비용 포함) 등 일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ul>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가 속한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전체 정비구역 중 본 단지의 대지경계 외 도로, 소공원 등의 사항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와 무관합니다.</li> <li>▪당 사업의 분양 시점 이후 단지 주변으로 건물 및 기반시설 등의 신축 및 개설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단지의 환경 변화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li> <li>▪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의 경계부 일부는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높이,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형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종교시설, 상업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철로 등 주위 환</li> </ul>  |

|            |  |  |
|------------|--|--|
|            |  | <p>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단지 북서쪽으로 기존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북동쪽으로 시온중앙강리교회, 남서쪽으로 호남선 철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및 그 부속시설(주차장 등)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및 조명 등에 노출되어 단지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거동의 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현장을 방문하시어 그 정도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북서쪽 대신3길 변에 접한 주거동은 인접한 준치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사용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주출입구 동측 시온중앙강리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주출입구와 시온중앙강리교회 사이의 대지경계선 일부 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동측 도산로에서 대신4길을 따라 단지 남측 완충녹지까지 보행자도로가 대지경계선 내로 설치되며,보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의무가 단지 관리 주체에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도로 인접부위는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인 관리분에 속합니다. 방음벽의 길이, 높이, 디자인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남측 완충녹지에 철도 소음 방지를 위한 부분 투시형 방음벽 설치 및 식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해당 동의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 및 식재에 대한 계획은 설치위치 및 주동과의 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 시공분이 아니므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주변에 설치 및 개량 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은 관련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은 보도의 경사를 따라 출입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정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난방시설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당 사업지 주변 현황과 인근 시설물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향후 어떠한이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li> </ul> |
| 학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대전시 학군 배정방법 등 대전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초등학교 배정은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및 대신중학교에 배정 예정입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단지 배치 및 동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약취발생,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거동의 동·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공간에서 미관의 저해와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판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전 동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며 일부 주동은 필로티 및 부대시설로 계획되었고,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li> <li>▪차량대기소 인근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조망 및 소음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주출입구, 부출입구 내 일부 도로는 회차로 확보를 위해 외부와 통제 없이 연결됩니다.</li>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시키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기구조, 근린생활시설,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각 보행 전용 연결로는 별도의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li> <li>*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li> <li>*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부대시설,D/A(환기구),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옹벽,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li> <li>*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li> </ul> </li> <li>▪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주출입구 동측 시온중앙강리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동측 도산로에서 대신4길을 따라 단지 남측 완충녹지까지 보행자도로가 대지경계선 내로 설치되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경사로, 계단 등의 형태나 위치는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 전력공급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
| 주거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전 세대 이삿짐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li> <li>▪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는 임대세대(39타입 전체 및 59타입 일부)가 함께 계획되어, 해당 타입으로 조합되는 일부 코어(101동)는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하나의 코어를 공유하도록 설치됩니다.</li> <li>▪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의 모든 주거동의 1층은 필로티 또는 부대복리시설로 설치될 예정이며, 각 필로티는 주거동 코어(승강기+계단실의 조합 단위)의 입구와 자전거보관소 및 환풍구 및 공기 흡입구 등이 설치됩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동은 근린생활시설 후면 주차장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저층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차량조명으로 인한 공해, 조업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냄새,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설치되는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li> <li>•102동, 103동은 지하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사용 소음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103동 배면에 다목적체육실 상부가 돌출되어 해당 시설의 사용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101동, 103동은 1층에 경비실이 설치되고 102동 1층에 스크스태이션, 107동은 1층에 작은도서관,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사용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103동 정면에 회차로가 위치하고 동 좌측에 부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는 차량의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부출입구 문주로 인해 저층 부분의 채광 및 조망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각 주동의 코어별 세대 수, 층수, 타입 등에 따라 승강기 속도 및 인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각 주동의 코어별 세대 수, 층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각 타입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술 배분한 값으로, 실제 각 타입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각 주거동별 계단실과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개수, 형상, 재질은 주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단실의 경우 통풍을 위한 개폐창이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5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li> <li>•101동 59B+74A 조합 코어에 해당하는 계단실은 창호가 설치될 수 없어, 통풍 및 채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102동은 30층을 초과하므로 1개 코어에 승강기가 2대 설치되며, 이외 주거동은 코어당 1대씩 설치됩니다.</li> <li>•각 주거동의 1층 코어 현관 홀의 동선 및 자동문, 경사로, 자전거보관소, 우편물 수취함 등의 위치, 마감재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주거동의 공용부 공간(승강기 홀 및 복도 등)은 비상시 피난 동선의 일부가 되는 공간으로 인접 세대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각 주거동 코어별 지하주차장 연결 동선의 편의성 및 인접 주차대수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유리난간형 창호 적용으로 이사짐 운반시 거실, 침실, 안방 발코니를 통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공용 승강기를 사용해야 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각 주거동별 세대 조합 형상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인접 세대와 직각 또는 둔각으로 접하여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일조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필히 이를 확인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외부 환기구,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 램프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악취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필히 이를 홍보 이미지 또는 모형,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li> <li>•104, 105, 106동 남측면 단지 외부 완충녹지에 철도 소음 방지를 위한 부분 투시형 방음벽 및 식재가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동의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 및 식재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 시공분이 아니므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 또는 옥상 및 옥탑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설비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 유무 및 타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
| 입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li> <li>•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li> </ul>   |

|                          |  |
|--------------------------|--|
|                          | <p>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본 아파트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축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항공장애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주동별 외장재는 저층부는 석재가 시공되나 계단실과 승강기 홀로 구성된 코어 외벽 부분은 도장이 적용됩니다.</li> <li>•각 주동별 외장 석재 적용 층수는 인접한 데크 부분 계획에 의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아파트 각 동 지붕층, 옥탑층, 축벽 등에 피뢰설비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 <p>부대 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복리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쓰레기 분리수거장(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생 주차장 인근에 별도 설치 예정)은 지상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모형 등 홍보물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임대차비용 일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단지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후 입주자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골프연습장의 타석 개수는 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타석 수 축소 및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li> </ul> |

|            |   |
|------------|---|
|            | <p>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등이 각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해당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협약 체결사항이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와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 전 입주자에게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공유 및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됨을 안내드립니다.</li> <li>▪103동 인근에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로 연결되는 공용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이며, 다목적체육실의 상부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저층세대에 조명 간섭,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1층 주민공동시설로 연결되는 선큰공간과 지하1층 작은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선큰공간이 각각 위치하며 조망형 엘리베이터, 외부계단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근접하게 하역공간 및 쓰레기보관소가 별도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이는 수목공사와 전혀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의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조경(식재,시설물,공간계획,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li> </ul>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p>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안테나+중계장치 : 103동, 104동 옥상층 / 중계장치 : 104동 지하1층 동통신실, 104동 지하2층 PIT.</li> <li>•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 연결이 필요하며,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정상적인 홈넷서비스 운용을 위해서는 서버전용 IP가 필요하며, 해당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됨. 그 이후 이전비용 또는 신설비용을 포함한 전용IP 관련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인터넷 회선 연결이 필요하며,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인허가사항, 관련기준, 단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이 아닌 주차구역은 주차가능구역 표시시스템, 차량위치 확인 시스템, 비상벨 등이 미적용됨.</li>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입주인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 무료 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li> <li>• 건물주택 영상의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변경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최소 요구사항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li> <li>※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li> </ul> </li> <li>•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 1층 주차장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 택배함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세대수 대비 수량 및 세대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li> </ul>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주차장 대수 1,144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8대(주차대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로 총 1,152대로, 세대당 약 1.3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진입 유효높이는 지하1층은 약 2.7m(차량통행로에 한함) 확보되어 있어 일반적인 택배차량2.7m의 경우 지하 1층까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li> <li>• 지하2층 및 지하3층은 유효높이 약 2.3m로 확보되어 각 유효높이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에는 장애인 전용구획 및 전기차 충전구획(충전시를 제외하고는 주차할 수 없음), 경차 전용구획 등이 포함되므로, 전체세대가 동일한 수준의 주차구획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해 설치될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동 하부 등의 피트부분 등은 임의로 사용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는 지상부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당 단지에는 적용됩니다.</li> <li>•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량은 급속 10대, 완속 30대, 이동형(콘센트 설치, 충전기 미제공) 40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타입,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당 단지에는 적용됩니다.</li> <li>▪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은 계획상 기동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역에 정화조, 빗물처리수조, 우수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이 아닌 주차구역은 주차가능구역 표시시스템, 차량위치 확인 시스템, 비상벨 등이 미적용 됩니다.</li> </ul>  |
| 기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 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입주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본 단지와 2단지 사이 통합 연결도로는 1,2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의 유지관리 의무를 갖게 되며,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사사고 등 발생 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li> </ul>   |
| 단위 세대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의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li> <li>• 각 주택형별 면적은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최종登記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주동별 결함으로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동일한 규모의 단위세대라도(59A타입과 59B, 74A타입과 74B타입 등) 각 타입별 동일 실내 공간 및 창호, 가구류 등의 치수(너비, 깊이) 및 사양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및 입주 시점의 시공 내용과 상이한 사항(입주 이후 입주자 임의의 구조 및 평면 계획, 인테리어, 각종 설비 등의 변경 공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공사는 하자 처리하지 않습니다.</li> <li>• 계약세대가 속한 층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2020년 11월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은 종전법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임대세대(39타입 전체 및 59타입 일부)가 함께 계획되어, 해당 타입으로 조합되는 일부 코어(101동)는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하나의 코어를 공유하도록 설치됩니다.</li> <li>• 39타입세대는 복도형 코어로 설치되어 세대후면 침실 창호와 복도가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타입은 일반적인 계단실형 코어로 설치됩니다.</li>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반적으로 세대 내로 승강기 작동 소음과 진동 등이 유입될 수 있으나, 일부 세대(59A타입, 59B타입 일부)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조경 수목,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건물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 및 옹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시설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우물천정 높이는 2.42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설비 설치를 위한 PD 및 PIT 공간은 벽체를 임의 탈거하여 전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측면, 하부 및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li> <li>•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우 경첩, 서랍재,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대 설치시 내부 헤어드라이기 수납 하드웨어는 본납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동빨래 건조대 설치시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빨래봉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석재류 화장대 및 욕실 상판의 경우 자재 생산의 규격으로 인해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
| 발코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됩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발코니의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시공되므로 도면상의 치수와 실 사용 치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발코니 외벽 개구부에는 철재난간이 설치되며, 창호는 발코니 안쪽 벽체에 설치됩니다.</li> <li>• 본 분양시 안내된 단위세대 평면과 상이한 임의적 발코니 확장 및 환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및 입주 후 분양시 안내된 확장형 평면 계획에 맞추어 개별 확장할 경우 해당 구청 등을 통해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 및 민원 등에 대해서는 본 시공사는 책임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천장에는 별도의 천장재가 설치되지 않고 구조체 자체에 도장으로 시공됩니다.</li> <li>•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확장되는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 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각 발코니의 바닥 높이는 확장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벽면에는 창호 미설치 및 철재난간이 설치되고 발코니 안쪽 벽체에 창호가 설치됩니다.</li> <li>•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바닥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더라도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실외기실) 천장에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이 설치될 예정으로 해당 부위에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견본주택에 지급품목으로 명기되어 전시되거나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한 시스템 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일부 타입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이외 타입은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해당 설치 공간의 천정에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안방 발코니에는 수전 일체형 스프레이건이 설치되며, 다용도실은 세탁기 수전 일체형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어 별도의 손빨래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우수수 선출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집중 호우 등 급격한 빗물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비확장형 선택시 외부 벽체가 아닌 발코니 안쪽 벽에 창호가 설치됨)</li> <li>•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우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내 대피방식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실외기실에 통합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비상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실외기 이외의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니 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실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층별교차 시공)</li> <li>• 하향식 피난구는 그 하층에 필로티 또는 피트,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시공되지 않으며, 안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및 침실 등의 창호 인근에 완강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3F~10F 적용예정,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
| 창호/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및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창호 및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발코니 외벽 개구부에는 철재난간이 설치되며, 창호는 발코니 안쪽 벽체에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 거실(39타입은 해당 발코니 외창), 안방 발코니 외창에 한해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쪽은 개폐할 수 없는 고정창으로 설치됨).</li> <li>•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창 등 너비 및 높이가 큰 창호의 경우 개폐시 창호 틀 및 인접 벽체 등의 떨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욕실용 목창호의 손끼임 방지장치는 본공사시 적절한 제품 선정 후,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제품에 따라 마찰소음,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쪽 중 실내로 돌출된 한쪽의 창쪽에만 설치됩니다.(74A, 74B, 84, 101타입 거실창은 양쪽 끝단부 창쪽)</li> <li>•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색상이 적용되지 않은 백색으로 시공됩니다.</li> </ul>  |
| 전기기계 설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좌우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거실 월패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li> <li>•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가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상부에(벽걸이 타입에어컨 기준) 기본 시공</li> </ul> |

|      |  |  |
|------|--|--|
|      |  | <p>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미시공 됩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평형 욕실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욕실2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세면대 배수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 할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3구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가스배관이 주방으로 인입되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관측 일괄소등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에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기능으로 변경됩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시 고려해야 합니다.</li> <li>• 세대 조명기구 색온도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일괄소등스위치 작동시 욕실횡도 함께 OFF상태가 적용됩니다.</li> <li>• 가구일체형 조명은 기본적으로 일괄소등스위치에 의한 제어가 미적용 됩니다.</li> <li>• 일괄소등스위치 복귀시(OFF→ON) 네트워크 스위치에 의한 조명은 기본적으로 OFF상태입니다.</li> <li>• 주방TV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전원만 연결된 것으로 실제 설치 시에는 케이블 종류, 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신발장 하부의 충전형 센서조명은 전시용이며, 전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충전형 타입으로 직접구매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li> <li>• 옵션형 주방가구의 매입조명 및 벽장하부조명의 스위치 및 안정기 보관박스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의 가구류 손잡이, 서랍재, 환기구, 약세사리 등의 하드웨어 및 샤워부스의 하드웨어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 기타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전력은 가공으로 인입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
| 견본주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59A, 84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 3층 키오스크 또는 '도마 포레나해모로' 홈페이지(<a href="https://hanwha.forena.co.kr/doma/">https://hanwha.forena.co.kr/doma/</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li>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판넬, 브라켓 및 펜던트 조명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li> </ul> |
|--|---|

|     |  |
|-----|--|
| 홍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및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 홈페이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ul> |
|-----|--|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별표 제4호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XI

### 기타사항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 등급 : 1등급, 내진능력 : VII-0.224g입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01222023-101-0001900호 | 195,431,600,000 | 입주자모집공고일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월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길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주택건설공사 감리         | 전기 감리         | 소방·정보통신 감리    |
|----|-------------------|---------------|---------------|
| 상호 | (주)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대원포비스(주)      | (주)지여이앤씨      |
| 금액 | 2,825,900,000 원   | 872,838,042 원 | 670,000,000 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현황**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시공사                      |
|--------|--------------------------------|-----------------------|--------------------------|
| 상호     |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한화/건설              |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
| 법인등록번호 | 160171-0012762                 | 110111-0002959        | 180111-0602507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11, 상가동203-1호(도마동)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6 (장교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

■ 견본주택

| 구분 | 약도  | 안내사항  |
|----|---|---|
| 내용 | <p>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p> <p>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9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 10:00 ~ 17:00<br/>※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li>• 운영기간 : 분양종료 시 까지<br/>※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대표번호 : 1600-2606</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s://hanwha.forena.co.kr/doma/">https://hanwha.forena.co.kr/doma/</a></li> </ul>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